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69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5일

발 의 자: 이영실, 김경훈, 김기덕,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남궁역, 민병주,  
박수빈, 박승진, 박중화,  
서준오, 송도호, 이민옥,  
이상훈,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임종국, 최기찬,  
최재란 의원(22명)

## 1. 제안이유

- 한강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다양한 생물종의 보금자리이자 도시 생태계의 핵심 축임. 그러나 최근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해 한강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한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한강공원의 목적에서 생태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증대, 이용환경 개선 등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생물다양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 제3호).
- 다. 한강공원 생태 보전 시책의 장·단기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분석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제4호).
- 라. 시장의 책무로 한강의 환경 훼손 최소화 및 홍보·참여 활성화 내용을 신설함(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

- 마. 시민의 책무로 한강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시책에 대한 적극적 협력 의무를 추가함(안 제6조 제2항).
- 바. 한강 시책 추진에 따른 생태환경·기능·생물다양성 변화 등 시책 집행의 효과와 실적 현황을 추가함(안 제10조 제2항 제2호).
- 사. 한강 이용현황 및 프로그램·행사 참여현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제2항 제3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을 “한강의 생태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 증대,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 이용환경 개선”으로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4조제3호 중 “설치되어야하며”를 “설치되어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과 관련된 시책은 그 집행으로 인한 한강 생태계의 장·단기적 변화를 지속하여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한강공원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한강의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민이 한강의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 프로그램·행사 개발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된다”를 “되며, 시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한강의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

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의 시책 추진에 따른 한강의 생태환경·기능·생물다양성의 변화 등 시책 집행의 효과와 실적 현황
3. 한강 이용현황 및 프로그램·행사 참여현황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시민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 <u>한강의 생태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 증대,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이용환경 개선</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u>&lt;신설&gt;</u></p>	<p>제3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u></p>
<p>3. 4. (생략)</p>	<p>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p>제4조(기본원칙) 한강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p>	<p>제4조(기본원칙) ----- ----- -----</p>

한다.

1.·2. (생략)

3. 한강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신설>

4.·5. (생략)

제5조(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 (생략)

<신설>

<신설>

----

1.·2. (현행과 같음)

3. -----  
-----  
----- 설치되어야 하며  
-----  
-----.

4.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과 관련된 시책은 그 집행으로 인한 한강 생태계의 장·단기적 변화를 지속하여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5조(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한강공원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한강의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한강의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제6조(이용시민의 책무) ① (생략)

② 한강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한강공원 백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한강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신설>

3. (생략)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 프로그램·행사 개발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민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되며, 시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한강의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한강공원 백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시책 추진에 따른 한강의 생태환경·기능·생물다양성의 변화 등 시책 집행의 효과와 실적 현황
3. 한강 이용현황 및 프로그램·행사 참여현황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및 제10조(한강공원 백서)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미래한강본부)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도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5조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붙임1)	1,217,090
제10조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한강공원 백서 제작)	46,089 (1,000)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 [붙임 1] 2024년 서울시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사업설명서

### □ 사업내용

- 한강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및 공원별 모니터링
- 한강공원 홍보물 제작
- 한강 영상기록물 제작 및 영상매체 활용 홍보
- 한강 관광 및 축제 홍보
- 언론매체를 활용한 디지털 홍보
- SNS 활용 대시민 홍보 강화
- 한강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상품화